

- 2022년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 의정비심의회 회의록**

- 일 시: 2022. 9. 6.(화) 11:00 ~ 12:10
- 장 소: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2층 상황실
- 안 건: 2023~2026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 참석위원: 10명
  - 위원장(우성대)
  - 위원  
(석진욱, 윤종명, 은재식, 이상준, 이정미, 이준화, 임성수, 지성욱, 최종민)

<input type="checkbox"/> 위촉장 수여	
<input type="checkbox"/> 행정부시장 인사말씀 후 퇴장	
<input type="checkbox"/> 위원장 선출	
<b>&lt;위원장 인사&gt;</b>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기 계신 각계 각층의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li> <li>○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에 있어 사회자이자 조정자로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li> </ul>
<b>&lt;의정비심의 일정 설명&gt;</b>	
정책기획관	○ 의정비심의 일정 등 개괄적인 설명
<b>&lt;회의공개여부 결정&gt;</b>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비 심의를 위한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의 공개 여부를 먼저 결정하겠습니다.</li> <li>○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는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li> <li>○ 다만, 비공개로 결정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는 심의회가 끝나면 시장이 회의록을 대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li> <li>○ 규정에 회의 공개가 원칙이니, 회의를 공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li> <li>○ 차후 회의에도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원칙을 위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공개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li> <li>○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li> </ul>

<b>&lt;회의자료 설명&gt;</b>	
위원장	○ 지금부터 2022년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정비 심의에 앞서 대구광역시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의정비 관련 회의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 회의자료설명
정책기획관	○ 부연설명
<b>&lt;회의진행&gt;</b>	
위원장	○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정비 심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구시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 의정비심의회가 2018년에 있었던 것 같고,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집행부에 여쭙고 싶은데 시의원 중에 겸직 실태와 초선, 재선 현황을 보고 싶은데요
의회협력팀장	○ 겸직신고현황은 저희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초선, 재선은 숫자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000	○ 네
의회협력팀장	○ 32명 중에서 재선이 13명이고, 19명은 초선입니다.
000	○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하는거지요? 의견은 있다가 말씀드리고,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보면 대부분 달랐는데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하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안하는 방식으로 결정했거든요. 자료로 본다면 그래서 대구시에도 주민 의견이나 여론 조사 이런 결하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타지를 보면, 자료에 보면 유일하게 세종시가 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례가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팀장	○ 저희는 이제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000	○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가 아마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에 대한 미비 이런것들이 맞물려가지고 그런 조사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정비 심의라는 부분들을 구성해서 논의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이미 기준이 보수인상률 이하면 이제 통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보수인상률도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 3.5%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1.4% 그 기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인건데 올해 만약에 타지역도 심의를 진행하고 있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참여, 의견수렴 이런 거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 더 높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협력팀장	○ 지금 저희가 사실 저희 시가 거의 선두 주자라고 보여집니다. 9월 초라서 저희가 이제 빨리 의정심의회 일정을 잡은 거는 000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법적으로는 공무원 보수율 이하일 때는 공청회나 주민여론 조사를 안해도 되지만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인상을 하셔야 된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일찍 1차 심의회를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주민여론조사를 해야되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000	○ 그 의견은 좀 있다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000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보면 의정활동비 1,800만원은 이거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월정수당이 이것이 공무원보수 인상률 보다 높으면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이하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3분의 2 찬성이 되면 통과가 되는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 000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월정수당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실 기준이 되는게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매년 3.8%에서 0.9%가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하게 되면, 내년 인상률을 모르는데 내년 인상률을 반영해서 이제 그 수준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혹시 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결정하는 특별한 그런 걸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올해는 1.4%지만 내년에는 2%가 넘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추이상 아니면 요즘 이렇게 분위기상 1.4%보다 떨어질 것 같다든가 혹시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 그게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라는 게 이게 딱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경기 문제, 그 다음에 경기 상황,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이제 공무원 노조하고 정부가 협상을 해서.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는 올해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17% 기재부에서 지금 결정을 해서 국회에 넘겼지만 그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어떤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보통 물가 상승률 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요. 기준이나 앞으로 예측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000	○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관	○ 저희 기획관님 말씀에 약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e나라 지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 한번 본 적은 있는데요. 대부분이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0.9%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3.2% 물가 상승률도 2.5% 높은 편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표를 봤을 때
000	○ 000라고 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준이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구체적인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산정 방법이 여기 보면 지역 주민 수 이것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정 활동 실적도 고려를 하고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리고 뒤에 이제 20페이지에 보면 주민수는 7위인데 월정수당 순위 이제 10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수 있다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이라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실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정 수당 기준이라는 게 딱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 수라든지 재정 능력, 보수 인상률 그다음에 의정활동 실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기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보수 인상률 기준으로 이렇게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들이 아까 저희가 예시한 것처럼 대부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의정활동의 실적은 이제 22페이지나 23페이지에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이게 수치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의정활동 실적이라는 게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수치화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 의회 회기 일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치화 한 거고요 혹시 이제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 21페이지를 보시면 대구가 종부세에 비해 월정수당을 보면 10위권으로 나오는데 부산이나, 대전 광주 제주 이런 쪽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지만 얼마 차이는 안되지만 순위가 10위로 나오니까 이지표를 보고 대구가 정말 역발전을 하는구나 생각을 해봤고, 23쪽에 보면 의원발의 건수를 보면 인구가 적은 곳보다 발의건수가 적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가 발전하는데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으는 게 좋고, 대구가 발전하면 시의회 월정수당도 훨씬 더 올라가고 할 거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찬찬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는데 발의 건수가 왜 이렇게 적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 아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000	○ 이거는 혹시 집행부에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의회 의원 32분 중에서 사법부 관련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으신 분 그 숫자도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관	○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예 그런 사례를 저희가 접하지를 못해서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000	<p>○ 추가로 한 번 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월정수당 결정시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정비 결정 통계자료를 쪽 보니까 예를 들어서 29페이지 그 결정 관련 통계 자료를 보니까 주민수 대비 1인당 의원 32명에 숫자는 많은데 이 숫자라는 의미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주민수가 대구가 예를 들어 의원 1인당 3위인데,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있는가 이런 거 보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월정수당 10위인데, 이 정도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 제실 것 같고 의정 활동에 비해서, 대구시 재정 자립도는 요즘 시장님께서 워낙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p> <p>의정비를 우리가 비율을 높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보수인상률이나 회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미없다. 의원 발의도 특정 정당이 많다보니까 정책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또 최근에 보면 청부입법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을까 조례뿐만 아니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데이터도 좀 부족하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심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 의원들의 의정비를 마음은 동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p> <p>앞서 얘기했듯이 의원들이 정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방지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또 개원하자마자 거수기 얘기를 듣고 있고 있지만 자기들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p> <p>지금 의장님도 보면 의정 활동이 거의 별로 하지 않으신 분이 의장도 되시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본다면 사실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 기능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지역 주민들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거. 물론 그중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10명의 어떤 위원들이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부분들보다도 지금 여기 보니까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4%밖에 안 되니까 보다 더 의원들한테 좀 채찍을 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월정 수당이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과감하게 지금 비판적인 여론도 듣고 그러면서도 일정 정도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의 자세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모든 걸 다 하는 거 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앞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공무원들도 정말로 1.4% 1.7%하는 부분은 너무 터무니</p>
-----	--

	<p>없이 물가에 비해서 낮은 비율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런걸 합쳐 본다면 마음은 동결을 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당신들의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해라 하는 부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조금 더 감시도 하고 격려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더 가져봤습니다.</p> <p>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저의 의견입니다.</p>
위원장	<p>○ 000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7개 시도 중에 통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게 공무원 인상률보다 높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준한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p>
000	<p>○ 000입니다. 여쭙볼 게 있는데 시민 여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무원 보수 1.4%를 넘겨야 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p>
정책기획관	<p>○ 조항에 보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그 중 한 개를 할 경우에는 결과를 반영해야하고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범위 내에 그거를 여기서 결정을 하면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다.</p> <p>예를 들어서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p>
000	<p>○ 인상률 내에서 결정하더라도 거기서 의견을 모아보고 하자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지요</p>
정책기획관	<p>○ 그 사례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는 안 넘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추세니까 이제 굳이 안 넘는데 여론 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넘지 않는 경우에는</p>
000	<p>○ 제 개인적인 생각도 000처럼 인상은 불가피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시의원분들이 좀 더 이렇게 여론 조사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보수는 올라가지만 좀 더 긴장을 하거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p>
000	<p>○ 우리 1.4%다 1.3%가 되는 거 1.5%가 되는 거 1.6% 되는 거는 1~2% 차이인데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강도가 왜 공무원들 보다 더 높게 책정하느냐 이런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위원장	○ 오늘 이렇게 회의하고 10월달에 우리가 다시 또 회의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00 위원님이랑 000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공무원 최소 인상률에는 적용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23 내년에는 1.4%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24년에는 1.7%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로 위원님들이 그 선에서는 동의하시는 걸로. 그러면 위원님들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현재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月 3,389,330원에 年 40,671,96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월정수당 지급 방향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을 거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동의해 주시기 1.4%, 그러면 동의가
정책기획관	○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 이내로 할 거면 이 상으로 할 거예요. 오늘 그것만 네 이상으로 간 사람 이내로 간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하로 할 거냐 초과로 할 거냐 그것만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론 조사를 할 것인지 공청회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 이내로 하면 1.4%를 동의하는 거고 이 이상으로 하면은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그 절차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보통 2개 안을 이내로 해서 1.4%로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내로
정책기획관	○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1.4%를 간다는 게 아니라 이내기 때문에 1.4% 이하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회의에
위원장	○ 다음에 하는거고
정책기획관	○ 오늘은 공무원 보상 대상률보다 높게 할 거냐 아니면 그 이하로 할 거냐를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 그럼 다시 한번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이내로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2/3이상. 우리는
000	○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다시 한번만 거수 이내로

000	○ 저는 한가지만 1.4% 이내라는 말은
의회협력담당	○ 동결을 포함한 1.4% 이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동결을 할 건지 1/2을 줄 건지 1/3을 줄 건지 그거는 나중에 정할수 있습니다.
000	○ 잠깐 죄송합니다 1.4프로 이내로 하더라도 여론조사는 가능한지
정책기획관	○ 이내로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여론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그러면 다시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1.4프로 이내 (8명 거수)
정책기획관	○ 8분이기 때문에 이내로 판단되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은 찬성위원 2/3이 됐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회의를 회의 시에는 다음 회의 할 때는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세부 지급 결정을 그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건인 의정활동비 건입니다. 의정활동비는 회의자료 6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전국의 광역의회가 동일하게 지급 상한 금액을 1,800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시에 세부 기준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안건을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협조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를 10월로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하고 10월 20일 중에 하루를 결정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모시고 4일 하고 20일을 둘 중에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들	○ 여러의견
위원장	○ 다음 회의는 10월 4일 오후2시로 우리가 회의 일정을 잡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10월 4일 오후 2시로 다음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오후 2시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1차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 죄송한데 여론조사를 그러면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왜냐하면 10월 4일날 여론조사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저희가 10월 30일까지 이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 시간이 조금 빠듯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4%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는 이제 낮게 하는 거를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론조사 공청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지 안 할지를 여기서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	○ 여론조사의 성격이 어디까지입니까
정책기획관	○ 일단 규정에는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를
000	○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반영할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 이제 규정에는 저희가 여론 조사를 해본적이 없어서 사실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이제 좀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1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항이 17페이지에 35조 5항에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 조사 기관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방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위원장	○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000	○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심의회에서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의회합의담당장	○ 근데 저희가 여기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인상률 이하 해서 가능한 하는데 저희가 금액을 좀 정해서 줘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이내에 줄 것이냐 4500에서 5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부 항목을 주고 이런 식의 항목으로 한 3개 정도 항목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000	○ 그렇게 질의하는 것 보다 1.4프로가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동결 뒤 0.5, 1, 1.4 이렇게 시민한테 현재 열만데 이렇게 결정됐고 이 범위 내에서
정책기획관	○ 이제 지금 결정하는 게 1.4%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앞으로 4년간 적용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는 1.4이하로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논의해야 될 거는 1.4%가 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이기 때문에 매년 바뀌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4년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게 적용 방법은 격년으로 할지 매년 같이 적용할지 아니면 3/4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데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인상을 할 경우에 인상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시민들이 바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 게 그래서 인상을 하는 경우에 보통 여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사 안 하는데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4년간 적용 되는 거기 때문에 2% 1% 이걸 이거를 이제 보수 확률이 매년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있다.

의회합의담당장	○ 저희 이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예시를 보면 저희가 아까 논의했던 대로 동결 할 건지 격년을 할건지 이렇게 항목을 세분화해서 하나를 잡아서해야 되거든요. 동결이나 동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해야 되고 첫 번째 금액은 무조건 23년도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다음 해부터 24년에서 26년까지 동결할것이나 1/2로 할것이나를 추가해서 여론조사를 해야된다
000	○ 저 같은 경우에는 1.4% 이하로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000	○ 10월말까지 정하면 되고 다음회의가 10월 4일로 잡혔기 때문에 그날 논의를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고민을 좀 해서 그때까지 정하면 좋겠다. 고민을 좀 해서 그때 가서 항목을 쓰면 좋겠다. 하게 되면 하게 된다. 안된다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하게 된다면 어떤 항목을 해야 할 거고 하는 게 10월 4일이니까 시간을 주고 하는 거 3주는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결정을
의회합의담당장	○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다음 회의 때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날
000	○ 여기 보면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보면 세종시가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1년 차 보수 초과해서 우리가 했지만 아무튼 그런 자료들 일단 여론조사 했는 자료들을 샘플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차기에서는 이 여론조사가 아 우리가 보수 공무원들 인상률보다 낮게 설정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면 공청회라도 좀 해서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놓고 고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결정된 의견 정리해 주신 대로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다는 이제 높지 않도록 하는 데는 이제 동의하신거고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할지 여부 그리고 할지 여부와 실제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퍼센테이지로 사례가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